

대구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270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2703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9가합21107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이병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박정수, 이나연

변론 종결 2021. 8. 18.

판결 선고 2021. 9. 29.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9가합211076 판결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식회사 D{대표이사 R}와 피고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별지2 '채권의 표시' 기재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에 별지3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4 '채권의 표시' 기재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당심 수정 부분' 및 제3항 기재 '당심 추가판단 부분'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수정 부분

수정 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성세무서장에 대한 2020. 2. 17.자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이 법원의 P원장,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수정 후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및 각 배당표 작성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V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매각대금 100,300,000원에 매각되었고, 2021. 1. 6. 실제 배당할 금액 97,560,971원 중 49,066,961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등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W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2 부동산이 매각대금 2,672,000,000원에 매각되었고, 2021. 6. 28. 실제 배당할 금액 2,659,555,100원 중 300,000,000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등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제7호증의 3, 제8, 9호증의 각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수정 전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수정 후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D에게 별지2 '채권의 표시' 기재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며, C에게 별지4 '채권의 표시' 기재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수정 전	등에 비추어 보면,
수정 후	⑥ 원고의 주장은, T가 D에게 원단·원사의 판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D와 T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대금을 수수하는 대신 상계에 의하여 대금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점, ⑦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D에 대한 실제 물품대금채권액 합계 223,626,680원을 초과하는 합계 349,066,961원을 배당받았다는 것이나,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채권액을 초과한 배당금은 부당이득으로 부동산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초과배당 여부는 원고 주장 사해행위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 주장 사해행위 당시에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 당심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실제로 원사를 납품하지 않았고, 피고가 주식회사 E 내지 중소기업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당심에서의 교환적 청구 변경에 의하여 실효되었다).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권형관

판사김규화

별지